



# 2024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안내



경 기 도



# 2024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b>제1장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개요</b>		
<b>추진방침 (p.1)</b>	<p>제1장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개요 2. 추진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안내서에 없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2023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준용</li> </ul>	<p>제1장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개요 2. 추진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안내서에 없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2024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준용</li> </ul>
<b>추진경위 (p.2)</b>	<p>3.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 개정(1~22차) : '09. 1. 7.~ '22. 12. 31.</li> </ul>	<p>3.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 개정(1~<u>23</u>차) : '09. 1. 7.~ '<u>23</u>. 12. 31.</li> </ul>
<b>지원절차 (p.2)</b>	<p>4. 지원절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지 원 절 차 도</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위기상황 발생</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요청 및 신고</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시·군·구/읍·면·동/도 콜센터(120)/민간협력체계</p> </div> </div> <p>가. 지원요청 또는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요청·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li> </ul> </li> </ul> <p>* 경기도콜센터 상담원은 위기가구 지원요청(제보)을 받은 경우 자체 없이 시·군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연계</p>	<p>4. 지원절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지 원 절 차 도</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위기상황 발생</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요청 및 신고</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 style="text-align: center;">시·군·구/읍·면·동/도 긴급복지콜센터(핫라인)/민간협력체계</p> </div> </div> <p>가. 지원요청 또는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요청·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 전용 콜센터(031-120-0) /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s://www.gg.go.kr/welfarehotline">https://www.gg.go.kr/welfarehotline</a>) /  경기복G톡</li> </ul> </li> </ul> <p>* 경기도긴급복지 상담원은 위기가구 지원요청(제보)을 받은 경우 자체 없이 시·군 및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담당공무원 등에게 연계</p>
<b>제2장 지원대상자 선정</b>		
<b>지원대상 (p.5)</b>	<p>제2장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li> <li>-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li> <li>-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경기도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준용)</li> </ul> </li> </ul>	<p>제2장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li> <li>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li> <li>- &lt;삭제&gt;</li> </ul> </li> <li>-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경기도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준용)</li> </ul>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 지원제외 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국민기초 생계</th><th>국민기초 의료</th><th>국민기초 주거</th><th>국민기초 교육</th></tr> </thead> <tbody> <tr> <td>신청가능 항목</td><td>전향복 지원 불가</td><td>생계·사례관리 지원 가능</td><td>생계·의료·사례관리 지원 가능</td><td>생계·의료·주거·사례관리 지원 가능</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li> <li>· 노숙인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노숙인 시설이 없는 시·군은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li> </ul>	구분	국민기초 생계	국민기초 의료	국민기초 주거	국민기초 교육	신청가능 항목	전향복 지원 불가	생계·사례관리 지원 가능	생계·의료·사례관리 지원 가능	생계·의료·주거·사례관리 지원 가능	<p>○ 지원제외 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국민기초 생계</th><th>국민기초 의료</th><th>국민기초 주거</th><th>국민기초 교육</th></tr> </thead> <tbody> <tr> <td>신청가능 항목</td><td>전향복 지원 불가</td><td>생계·간급통합 지원 가능</td><td>생계·의료·간급통합지원 지원 가능</td><td>생계·의료·주거·간급통합지원 지원 가능</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li> <li>· 「노숙인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노숙인 시설이 없는 시·군은 시장·군수가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li> </ul>	구분	국민기초 생계	국민기초 의료	국민기초 주거	국민기초 교육	신청가능 항목	전향복 지원 불가	생계·간급통합 지원 가능	생계·의료·간급통합지원 지원 가능	생계·의료·주거·간급통합지원 지원 가능
구분	국민기초 생계	국민기초 의료	국민기초 주거	국민기초 교육																		
신청가능 항목	전향복 지원 불가	생계·사례관리 지원 가능	생계·의료·사례관리 지원 가능	생계·의료·주거·사례관리 지원 가능																		
구분	국민기초 생계	국민기초 의료	국민기초 주거	국민기초 교육																		
신청가능 항목	전향복 지원 불가	생계·간급통합 지원 가능	생계·의료·간급통합지원 지원 가능	생계·의료·주거·간급통합지원 지원 가능																		
위기 상황의 정의 (p.7)	<p>2. 위기상황의 정의</p> <p>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p> <p>(1) 의료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자의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 포함</li> <li>· 간병비 1회,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 다른 상병 일시 간병비 지원가능)</li> </ul> <p>(2) 생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li> </ul>	<p>2. 위기상황의 정의</p> <p>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p> <p>(1) 의료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자의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 포함</li> <li>· 간병비 1회, 300만원 범위 내 &lt;삭제&gt;</li> </ul> <p>(2) 생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가구별 1명 한정)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li> </ul>																				
위기 상황의 정의 (p.12)	<p>2. 위기상황의 정의</p> <p>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p> <p>③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 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li> <li>·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li> </ul>	<p>2. 위기상황의 정의</p> <p>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p> <p>③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 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li> <li>·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li> </ul>																				
위기 상황의 정의 (p.14)	<p>⑧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li> <li>· 무급휴직일 전월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 시간 이상인 경우(월 60시간 이상)</li> </ul> </li> </ul> <p>* 확인되는 급여가 549,600원(최저임금×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p>	<삭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li> <li>·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li> <li>- 확인서류 :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별첨 5-1호 서식)</li> <li>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li> <li>-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li> <li>·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이나 '21년도 동월 또는 '22년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li> <li>· 부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li> </ul> </li> <li>-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VAN사·카드사 또는 POS(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li> <li>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li> <li>**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li> </ul> </li> </ul> <p>&lt;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시 (고용노동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li> <li>•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li> <li>•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li> <li>•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li> <li>•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li> <li>•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 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li> <li>•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료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복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경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li> </ul> <p>※ 예시에 없는 경우라도 고용노동부의 정의에</p>	<p>&lt;삭제&gt;</p> <p>&lt;삭제&gt;</p>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부합하면 적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이나 '21년도 동월에 '22년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li> <li>· 부소득자의 이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li> </ul> </li> <li>- 확인서류 : 계좌 거래내역 사본,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특고·프리랜서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li> </ul>	
위기 상황의 정의 (p.15)	<p>3. 지원단위</p> <p>가. 지원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sup>1)</sup> 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li> </ul> <hr/> <p><sup>1)</sup>보건복지부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가구의 범위(p.37~40) 중 아래사항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범위 중 ① ~ ④항</li> </ul> </li> <li>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li> <li>③ 가구원의 변동</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단위 : 생계·주거·연료비, 사례관리지원, 전기요금</li> <li>○ 주지원, 부가지원 지원 병행</li> <li>- 주급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례관리지원</li> </ul>	<p>3. 지원단위</p> <p>가. 지원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sup>1)</sup> 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li> </ul> <hr/> <p><sup>1)</sup>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가구의 범위 중 아래사항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범위 중 ① ~ ④항</li> </ul> </li> <li>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li> <li>③ 가구원의 변동</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단위 : 생계·주거·연료비, 긴급통합지원, 전기요금</li> <li>○ 주지원, 부가지원 지원 병행</li> <li>- 주급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긴급통합지원</li> </ul>

### 제3장 항목별 지원내용

생계 지원 (p.16)	제3장 항목별 지원내용	제3장 항목별 지원내용																															
	<p>1. 생계지원</p> <p>다. 지원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r> </thead> <tbody> <tr> <td>지원금액</td> <td>623,300</td> <td>1,036,800</td> <td>1,330,400</td> </tr> <tr> <th>가구원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r> <tr> <td>지원금액</td> <td>1,620,200</td> <td>1,899,200</td> <td>2,168,300</td> </tr> </tbody> </table> <p>*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p> <p>라. 지원기간 : 3개월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3개월 지원 가능</li> </ul> <p>마. 생계비 지급일</p> <p>* 최초 지급 후(결정일), 익월부터는 매월 20일 일괄 지급 가능</p>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가구원수	4인	5인	6인	지원금액	1,620,200	1,899,200	2,168,300	<p>1. 생계지원</p> <p>다. 지원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r> </thead> <tbody> <tr> <td>지원금액</td> <td>713,100</td> <td>1,178,400</td> <td>1,508,600</td> </tr> <tr> <th>가구원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r> <tr> <td>지원금액</td> <td>1,833,500</td> <td>2,142,600</td> <td>2,437,800</td> </tr> </tbody> </table> <p>*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원</p> <p>라. 지원기간 : 3개월 지원(1개월 단위 3회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3개월 범위 내 지원 가능</li> </ul> <p>마. 생계비 지급일</p> <p>* 최초 지급 후(결정일), 다음 월부터는 매월 20일 일괄 지급 가능</p>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가구원수	4인	5인	6인	지원금액	1,833,500	2,142,6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가구원수	4인	5인	6인																														
지원금액	1,620,200	1,899,200	2,168,3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가구원수	4인	5인	6인																														
지원금액	1,833,500	2,142,600	2,437,8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의료 지원 (p.17)	<p>제3장 항목별 지원내용</p> <p>2. 의료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사유가 같을 경우(동일질병) 지원종료 시점 1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예) '21.7월 지원결정 후 퇴원했을 경우 '22. 8월 이후 지원신청 가능</li> <li>· 동일질병 치료 후 재활, 요양병원 재입소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 (예) '21.8월 최초 입원 및 요양병원 이송에 따른 치료비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질병으로 '22. 9월 이후 재지원시에는 요양병원 치료비는 지원불가</li> </ul> </li> <li>다. 지원금액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지원액수가 초과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종료 3일 이전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장심의위원회”(사전심의 원칙, 불가피한 경우 지원연장 결정 후 1개월 이내 사후 심의)를 통하여 연장 지원여부를 300만원 이내에서 결정</li> <li>*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음</li> </ul> </li> </ul> </li> </ul> </li> </ul>	<p>제3장 항목별 지원내용</p> <p>2. 의료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사유가 같을 경우(동일질병) 지원종료 시점 1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예) '23.7월 지원결정 후 퇴원했을 경우 '24. 8월 이후 지원신청 가능</li> <li>· 동일질병 치료 후 재활, 요양병원 재입소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 (예) '23.8월 최초 입원 및 요양병원 이송에 따른 치료비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질병으로 '24. 9월 이후 재지원시에는 요양병원 치료비는 지원불가</li> </ul> </li> <li>다. 지원금액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 지원액수가 초과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종료 3일 이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사전심의 원칙, 불가피한 경우 지원연장 결정 후 1개월 이내 사후 심의)를 통하여 연장 지원여부를 300만원 이내에서 결정</li> <li>*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대신할 수 있음</li> </ul> </li> </ul> </li> </ul> </li> </ul>
의료 지원 (p.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암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와 별도로 총 100만원 범위 내 3회 지원</li> </ul> </li> <li>○ 간병비 :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입원기간에 발생한 유료간병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상병 1회, 300만원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병비만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다만, 중한 질병으로 긴급 의료지원 대상이나, 산정특례, 의료급여 등 다른 사업지원으로 미대상인 경우 간병비 부담이 심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가능</li> <li>* 다른 상병 발생으로 의료비 지원 결정 시 간병비 지원가능</li> </ul> </li> </ul> </li> </ul> <p>(2) 지원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이 결정된 상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암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와 별도로 총 100만원 범위 내 3회 지원 가능</li> </ul> </li> <li>○ 간병비 :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입원기간에 발생한 유료간병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상병 1회, 300만원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지원인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간병비 지원대상임 단, 다른 사업 지원(의료산정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의료급여, 만간 의료지원 등)으로 지원받아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간병비 부담이 심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가능</li> <li>* 다른 상병 발생으로 긴급의료 지원 결정 시 간병비 지원가능</li> </ul> </li> </ul> </li> </ul>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와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여 긴급의료지원 대상가구에 대한 간병비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 가능</li> </ul> <p>(2) 지원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이 결정된 상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li> </ul>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며, 퇴원 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퇴원일 포함,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신청가능  * '20.12.15일 퇴원자부터 적용</p>	<p>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며, 퇴원 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퇴원일 포함,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신청가능  * &lt;삭제&gt;</p>
긴급 통합 지원 (p.22)	<p>5. 사례관리지원</p> <p>가. 지원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서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li> <li>-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선정 기준 이내의 가정으로 접수신청이 아닌 시장·군수의 판단 사항임</li> </ul> <p>※ 국비사업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 미해소 가구 지원 가능</p> <p>나. 지원 제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가구는 지원 불가</li> <li>○ &lt;신설&gt;</li> <li>○ &lt;신설&gt;</li> </ul> <p>다. 지원금액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li> </ul> <p>※ 사례관리지원이 종료 된 후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p> <p>라. ‘긴급복지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과 별도 운영</li> <li>○ 선정방법 : 간소화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례관리지원 위기도 조사표 활용(현재 34개항목 → 10개 항목)</li> </ul> <p>※ 현 복지부 지침의 &lt;위기도 조사&gt;를 개선 &lt;경기도형 긴급복지 사례관리지원 위기도 조사&gt;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도 조사는 문제의 원인과 관계없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결정에 활용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회의(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권역사례회의, 솔루션위원회 등)를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선정 및 지원수준 등 결정</li> </ul>	<p>5. 긴급통합지원</p> <p>가. 지원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에서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li> <li>-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선정 기준 이내의 가정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을 판단하여 지원 결정함</li> </ul> <p>※ 타사업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 미해소 가구 지원 가능</p> <p>나. 지원 제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가구</li> <li>○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연간(지원시작 시점부터 1년) 지원받은 기간의 합이 9개월 이상인 가구</li> </ul> <p>(예)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24.2.16.~10.15. 지원받은 경우 긴급통합지원은 업무담당자 등이 위기상황에 따른 지원 적정성 판단 이후 '25.2.16.부터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다른 사업의 사례관리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li> </ul> <p>다. 지원금액 및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li> </ul> <p>※ 긴급통합지원이 종료 된 후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p> <p>라. ‘긴급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희망복지지원단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시군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의 통합사례관리 대상과 별도 운영</li> <li>○ 선정방법 : 긴급통합지원 위기도 조사표(서식 제16호) 활용</li> </ul> <p>※ &lt;삭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도 조사는 문제의 원인과 관계없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결정에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회의(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권역사례회의, 솔루션위원회 등)를 통해 긴급통합지원 대상자선정 및 지원수준 등 결정</li> </ul>
시장·군수	<p>6.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p> <p>나. 지원종류</p>	<p>6.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p> <p>나. 지원종류</p>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b>추가지원 결정항목 (p.24)</b>	<p>(1) 연료비 :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장기입원, 부분 무료임차가구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준 : 월 110,000원</li> </ul> <p>(3) 해산비 :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횟수 : 1회</li> </ul> <p>(4) 장제비 :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횟수 : 1회</li> </ul>	<p>(1) 연료비 :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장기입원, 부분 무료임차가구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준 : 월 <u>150,000원</u></li> </ul> <p>(3) 해산비 :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횟수 : <u>1인당 1회(쌍둥이 출산시 2,000천원)</u></li> </ul> <p>(4) 장제비 :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횟수 : <u>1인당 1회</u></li> </ul>																												
<b>제4장 사후조사·대상자관리</b>																														
<b>사후조사 (p.26)</b>	<p>제4장 사후조사·대상자관리</p> <p>1. 사후조사</p> <p>가. 사후조사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복지제도 우선 검토</li> </ul> <p>다. 사후조사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사</li> <li>- 금융재산은 1개월 이내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지원의 적정성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조사 보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li> </ul>	<p>제4장 사후조사·대상자관리</p> <p>1. 사후조사</p> <p>가. 사후조사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가 긴급복지 지원사업</u> 우선 검토</li> </ul> <p>다. 사후조사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사</li> <li>- 금융재산은 1개월 이내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지원의 적정성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조사 보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li> </ul>																												
<b>사후조사 (p.27)</b>	<p>1. 사후조사</p> <p>라. 사후조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보호(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제19조)</li> <li>○ 보건복지부『2023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및 소득조사, 재산조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준용</li> </ul>	<p>1. 사후조사</p> <p>라. 사후조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보호(『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제19조)</li> <li>○ 보건복지부『2024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및 소득조사, 재산조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준용</li> </ul>																												
<b>적정성 심사 (p.29)</b>	<p>2. 적정성 심사</p> <p>마.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u>100%</u> 이하 (단위 : 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r> <tr> <td>기준 중위소득(100%)</td> <td>2,077,892</td> <td>3,456,155</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r> <td>4,434,816</td> <td>5,400,964</td> <td>6,330,688</td> <td>7,227,981</td> </tr> </table> <p>*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p> <p>*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일: 1월 1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재산 기준 : 1,200만원 이하</li> </ul>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p>2. 적정성 심사</p> <p>마.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u>100%</u> 이하 (단위 : 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1인가구</th> <th>2인가구</th> </tr> <tr> <td>기준 중위소득(100%)</td> <td>2,228,445</td> <td>3,682,609</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3인가구</th> <th>4인가구</th> <th>5인가구</th> <th>6인가구</th> </tr> <tr>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d>7,618,369</td> </tr> </table> <p>*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p> <p>*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일: 1월 1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재산* 기준 : 1,200만원 + <u>생활준비금(가구원 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금액)</u> 이하</li> <li>*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li> </ul>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b>의료비 연장심사 (p.29)</b>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연장 심사 나. 연장 심사 기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등 - 시·군의 실정에 맞게 운영에 적합한 심사위원회를 선정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연장 심사 나. 연장 심사 기구 ○ <u>긴급지원심의위원회</u> 등 - 시·군의 실정에 맞게 운영에 적합한 심사위원회를 선정



# 목 차

## 제1장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개요

1. 근 거 .....	1
2. 추진방침 .....	1
3. 추진경위 .....	2
4. 지원절차 .....	2

## 제2장 지원대상자 선정

1. 지원대상 .....	5
2. 위기상황의 정의 .....	6
3. 지원단위 .....	15

## 제3장 항목별 지원내용

1. 생계지원 .....	16
2. 의료지원 .....	17
3. 주거지원 .....	19
4. 교육지원 .....	21
5. 긴급통합지원 .....	22
6.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24

## 제4장 사후조사·대상자관리

1. 사후조사 .....	26
2. 적정성 심사 .....	27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연장 심사 .....	29
4. 지원종료 결정 .....	30
5.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30
6. 이의신청 .....	32
7. 기 타 .....	33

## 제5장 서식

## 제6장 참고사항

1. 사업담당자 .....	63
2. 경기도의료원 현황 .....	64
3. 복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 .....	65





# 제1장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1 근 거

-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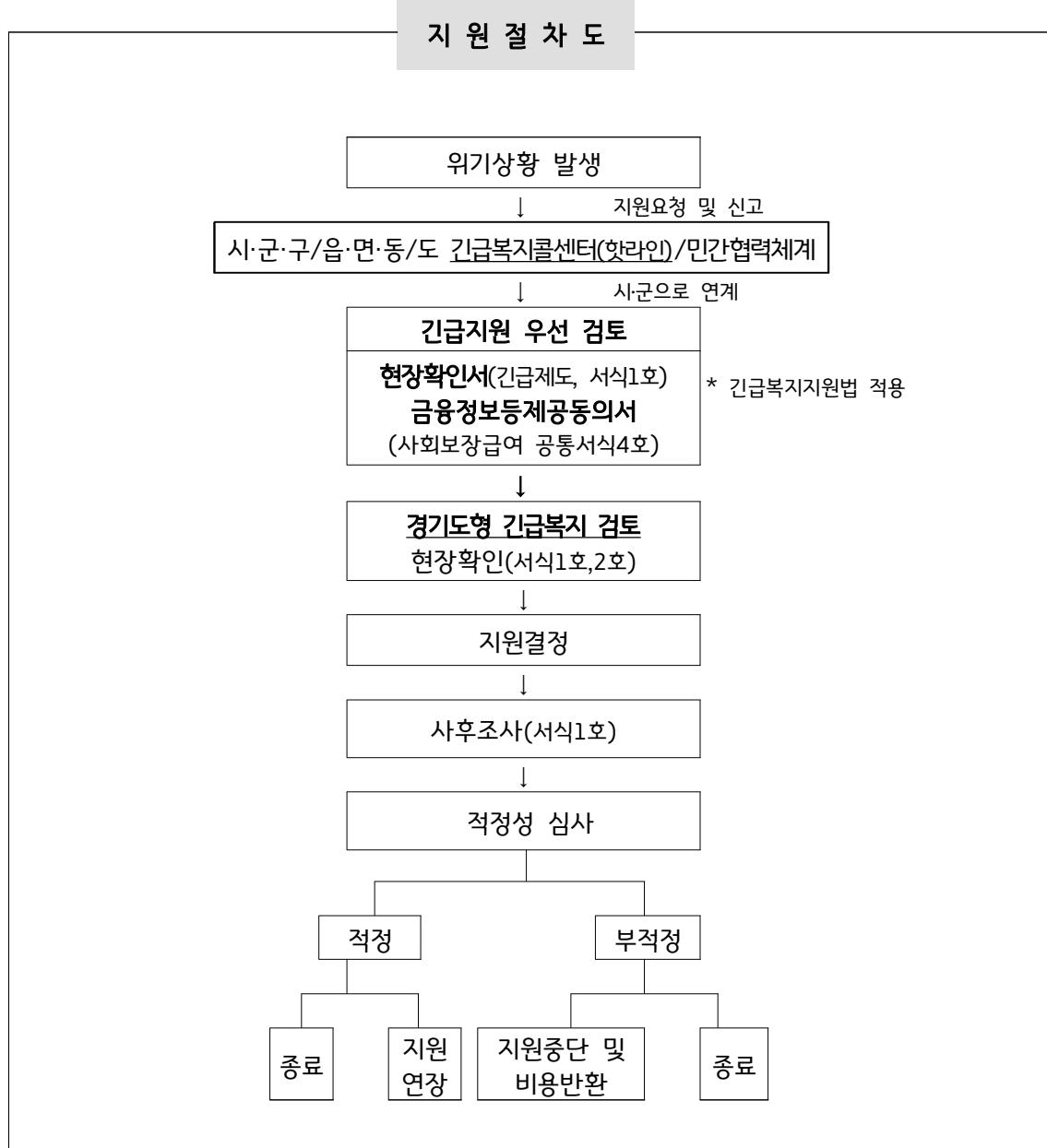
## 2 추진방침

- 위기에 처한 도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정장치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중복지원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자산 조사 등을 준용하되 기존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지원
- 현장 확인을 통한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성 확보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의료지원의 경우 동일질병으로 지원 종료 1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경기도형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의료지원 예외)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중 필요 시 민간지원 및 사례관리 등 연계
- 본 안내서에 없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준용

### 3 추진경위

- 무한돌봄사업 시행 : '08. 11. 1.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침 개정(1~23차) : '09. 1. 7.~ '23. 12. 31.

### 4 지원절차



## 가.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지원요청·제보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 전용 콜센터(031-120-0) /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welfarehotline>) /  경기복G톡
  - \* 경기도 긴급복지 상담원은 위기가구 지원요청(제보)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 및 읍·면·동 복지사각지대 담당공무원 등에게 연계
- 지원요청 및 신청접수
  - 시군구 /읍면동 담당공무원

## 나. 현장확인

-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자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 결정
- 현장확인 주체
  - 시군구 /읍면동 경기도형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이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 현장 확인 시기
  - 지원요청·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콜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 실시
  - 야간(18시 ~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 상담원으로부터 지원요청·신고를 연계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 실시
-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에 대한 신청서류 및 현장 확인
  -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신청 시 작성한 **현장 확인서** (긴급복지지원, 서식 1호)를 활용하여 접수, 내용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현장 확인 실시

#### **다.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는 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 등)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체 없이 지원·결정 실시

#### **라. 사후조사**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확보
- 가구구성, 소득, 재산 등의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등록된 조사표 활용을 통해 선정기준 등을 확인
-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

#### **마. 적정성 심사**

-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

#### **바.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부적정한 지원임이 사후 발견된 경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현장확인 시 소명 내용과는 다르지만 고의적인 거짓이 없는 경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수 여부 및 규모를 결정

## 제2장 지원대상자 선정

###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기도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준용)

○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되, 타 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구분	국민기초 생계	국민기초 의료	국민기초 주거	국민기초 교육
신청가능 항목	전향목 지원 불가	생계·긴급통합지원 지원 가능	생계·의료· 긴급통합지원 지원 가능	생계·의료·주거· 긴급통합지원 지원 가능

- 다만, 국민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
-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6개월 이내 노숙생활을 시작한 노숙인은 지원 가능 (노숙인 쉼터 및 노숙인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대상자로 긴급지원 및 행려환자 의료급여 우선연계 실시)
  - 「노숙인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노숙인 시설이 없는 시·군은 시장·군수가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2 위기상황의 정의

### 위기상황

-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바. 시설 퇴소아동
  -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1)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자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자

(2) 부소득자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

\*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3) 사망

(4)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또는 행방불명 신고 된 자

- 시장·군수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5) 군입대

(6)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1)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입원 및 수술을 받은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치료 연장을 위해 이송되는 경우의 요양 및 재활치료비 포함
- \* 입원 및 수술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300만원 이내 비급여 의료비 지원 가능, 최대 3개월 이내)
- (예) 뇌출혈, 뇌경색 등에 따른 입원 수술 후 요양병원 이송 또는 재활치료 전환 시
- 항암치료 비용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의료비 별도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대상자의 항암치료비 제외. 단, 암환자 지원을 받아 수술 및 입원비로 모두 사용하여 항암치료비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 가능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자의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 포함
  - 간병비 1회, 300만원 범위 내

### (2) 생계지원

-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가 근로 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진단서, 근로곤란사실조사 확인서(서식 제14호) 등 서류 첨부
  - 생계곤란으로 검사비 및 치료비가 없어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할 때 의사소견서로 확인 가능 (○○질환이 의심되어 정밀 검사 필요 등)
  -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질병·부상 등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가능
- 단독가구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입·퇴원 기간이 짧은 경우, 단독가구 및 입원한 자를 포함하여 생계지원 가능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1) 가구구성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

(2) 방임·유기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경우

(3)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4) 가정폭력

- 가구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제출 예) 진단서, 신고 접수증 등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퇴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및 경매·공매,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위와 유사한 사유로 현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거명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원칙

(예) 건물주 확인서 또는 내용 증명서 등 단, 건물주가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주지에서 강제퇴거 관련 증빙자료를 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 가능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목적은 지원 불가

## 마. 실직, 사업의 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개월 간 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제10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 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으로 생계곤란의 경우 지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이고, 휴·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 < 실직 · 사업실패 사유의 생계유지 곤란가구 지원 제외 >

-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실직 불인정
- 1개소 사업자 등록을 휴·폐업 하였으나, 현재 1개소 이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무실적인 휴·폐업자
- 사채업(대부업) 사업등록자

### (2) 실직, 사업실패(휴·폐업)자 판단기준 및 관리

-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직업소개소 기록,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당사자 진술 소득신고서 등을 통하여 실직 사실 확인
- 사업실패(휴·폐업)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고용주 연락처 등 실직, 사업실패 입증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단, 신청자의 진술과 정황을 고려하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직 시 진단서(치료 소요기간 명시) 확인으로 근로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추가지원 결정

## 바. 시설퇴소아동

- 아동양육시설(그룹홈·가정위탁 등)의 보호종결아동의 경우 일시금으로 자립 지원금을 받지만, 지속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설퇴소 아동의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 지원
- 시설퇴소확인서 등으로 사실 확인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간병·보호하는 가구원의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하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월 소득<sup>\*</sup>의 30% 이상을 이자 상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 월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3개월 이상 채무 연체되어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 사례에 대해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 지원 가능

### 시장·군수 인정 위기상황의 주요사례(예시)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 단전(전류제한기 설치)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 받은 에너지 빈곤 우려 가구가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장기간 의도적 체납 가구 제외)
- 위기 사유가 단전, 단가스, 기체납의 경우 지원되는 급여로 연체된 공과금을 우선(일부) 해결하도록 안내, 재지급시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될 경우 지원 제외할 수 있음
  - 체납의 사유로 각 항목을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지양
-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로 생계 어려운 경우
- 한부모가족(법률적 이혼가구 포함)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비닐하우스·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로 해당 재난 수습 등으로 생계 어려운 경우
  - 피해 당사자 가구 및 실질적으로 재난(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가족, 친인척(1가구) 포함
-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출소의 사유로 긴급복지(정부)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 중한 질병(수술 또는 수술에 준하는 시술)으로 병원 퇴원 후 환경적응 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 활동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타 생계지원 받지 않은 경우
-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 어려운 경우(실업급여 지원 중인 자,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생계지원을 기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소 주거면적에 거주하며 최근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임시·일용직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소면적( $m^2$ )	14	26	36	43	46	56

- 구조적(계절적) 요인,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일용직 가구
- 소득 감소 및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은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이전 3개월 평균 소득대비 20% 이상 또는 1인가구 기준 40만원 이상 감소를 의미(일용소득 파악이 곤란한 경우 급여통장사본, 국세청신고자료,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을 토대로 확인)
- 경찰·소방서에서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한 경우

##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 동안 전(前) 배우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생계가 곤란할 우려가 크므로 지원기간 제한 없음). 이 경우 이혼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 (긴급지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 지원방법

- 초기 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담당자와 연계하여 기존 제도를 우선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 선지원 가능
- 기초수급심사 자료를 통한 가족과의 관계단절 여부 참고  
(부양의무자와의 현실적인 관계단절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서식 18호 긴급지원 의뢰서)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신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의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서식 18호 긴급지원 의뢰서)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 (11월 ~ 12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뿐 아니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지자체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된 일체의 대상자 중 관계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사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 이외에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발굴하는 가구도 포함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18호 긴급지원의뢰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추천
  -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 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원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지원
  - ※ 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 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8호 긴급지원의뢰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추천
  -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 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원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지원
  - ※ 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추천기관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8호 긴급지원의뢰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추천
  -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시행
- 추천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지원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지원
  - ※ 담당부서에서 이미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3 지원단위

#### 가. 지원단위

- 가구<sup>1)</sup>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가구단위 : 생계·주거·연료비, 긴급통합지원, 전기요금
  - 개인단위 : 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장제비
- 주지원, 부가지원 지원 병행
  - 주 급 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긴급통합지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 주지원 복합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주지원 지원 가능

#### 나. 별도가구 지원

- 위기사유 발생가구로 가구 전체로는 선정기준에 맞지 않으나, 별도가구로 분리 하면 지원이 가능한 다음의 가구
  - 형제·자매, 친인척, 동거인의 집에 거주하는 자 중
    - 중증장애인, 출소자,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한 자가 형제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1인가구로 지원가능
    - 가구 구성원의 학대 및 폭력 등에 의하여 임시거처에서 생활하여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예) 친부에게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여 모친과 함께 친척집에 임시로 피신한 상태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이 입증 가능한 경우 친부를 제외한 모녀를 별도가구로 구성하여 지원가능

1)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가구의 범위 중 아래사항 준용

-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외국인의 범위 중 ⑦ ~ ⑩항
-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③ 가구원의 변동

## 제3장 항목별 지원내용

### 1 생계지원

가. 지원대상자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지원방법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입금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위기상황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물품(서비스) 제공 가능

다.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원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라. 지원기간 : 3개월 지원(1개월 단위 3회 지급)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3개월 범위 내 지원 가능
- 긴급지원을 받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추가 지원시 금전 지원 원칙
  - \* 다만, 금전지원 불가시 예외적으로 생계에 소요되는 물품을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긴급지원 6개월 받은 경우 경기도형은 3개월만 지원 가능(3개월 연장 불가)
  - \* 긴급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간의 합이 연간(지원시작 시점부터 1년) 9개월을 넘지 않도록 함

마. 생계비 지급일

- 신규 대상자 지원 : 지원결정 즉시 지급
-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 지급
  - \* 최초 지급 후(결정일), 다음 월 부터는 매월 20일 일괄 지급 가능
- 거주지 변경 시 지원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 거주지 시장·군수 지원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전 거주지 시장·군수 지원

## 2 의료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지원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에 한함
  - \* 10만원 미만(간병비 제외) 소액 지원 불가, 항암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소액 의료비 지원 제한 없음
- 질병사유가 같을 경우(동일질병) 지원종료 시점 1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예) '23. 7월 지원결정 후 퇴원했을 경우 '24. 8월 이후 지원신청 가능
    - 동일질병 치료 후 재활, 요양병원 재입소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
  - (예) '23. 8월 최초 입원 및 요양병원 이송에 따른 치료비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질병으로 '24. 9월 이후 재지원시에는 요양병원 치료비는 지원불가

### 나. 지원방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 지급, 퇴원 후 신청할 경우, 의료비를 납부한 자에게 지급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을 징구 \* 보험증권 \* 간병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중복여부 확인
-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간병인 파견기관에게 소요된 비용 지급
  - \* 간병비를 기납부한 경우에는 간병비를 납부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파견기관으로부터 경력증명서, 영수증(청구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징구, 불가피하게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경력증명서, 간병인 활동일지 및 내역서(서식 제15호), 통장사본 등을 징구

### 다. 지원금액 및 범위

#### (1) 지원금액

-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 의료비 지원액수가 초과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종료 3일 이전에 “고급지원 심의위원회”(사전심의 원칙, 불가피한 경우 지원연장 결정 후 1개월 이내 사후 심의)를 통하여 연장 지원여부를 300만원 이내에서 결정
    - \*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대신할 수 있음
  - 긴급지원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시 미지원 되는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지원
  - 연장지원 불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총 3회 지원 시 재지원 불가
  - 보건소 암환자 지원 대상자는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수술 및 입원비로 모두 사용하여 항암치료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현장 확인 후 지원 가능
    - \* 의료비와 별도로 총 100만원 범위 내 3회 지원 가능
- 간병비 :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입원기간에 발생한 유료간병비 지원
  - 동일상병 1회, 300만원 범위 내
    - \* 주지원인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간병비 지원대상임. 단, 다른 지원(의료산정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의료급여, 민간 의료지원 등)으로 지원받아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간병비 부담이 심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가능
    - \* 다른 상병 발생으로 긴급의료 지원 결정 시 간병비 지원 가능
    - \*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와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여 긴급의료지원 대상가구에 대한 간병비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 가능

## (2) 지원범위

- 지원이 결정된 상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며, 퇴원 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퇴원일 포함,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신청 가능
  - \*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치료연장을 위해 이송 되는 경우 이송일(전원) 기준 30일 이내
    - \* 단, 퇴원 후 신청할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사후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중복·부정수급 방지)
    - \* 추후, 재난적의료비 등 타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중복지원 금액)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여부 확인방법 (①,② 모두확인)

- |  |
|--|
| ① 행복e음 → 긴급복지 → 긴급복지지원 지급내역등록 → 지원종류(의료지원) → 금액 <input type="checkbox"/> → 의료비 입력화면(오른쪽 상단) 재난적의료비 내역 조회 |
| ② 국민건강보험( <a href="http://www.nhis.or.kr">www.nhis.or.kr</a> ) → 지사찾기 → 경기 → 시군선택 → 보험급여담당(재난적의료비 담당) 문의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6호서식)의 전액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본인기본 식대(급여)는 지원 가능
- \*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입원료 등 국가 긴급복지 제외 항목 준용
-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입원 및 수술을 받은 후 바로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치료 연장을 위해 이송 되는 경우(비연속행위 시 상기 질병으로 인한 요양·재활 치료임을 진단서 등으로 확인, 비연속행위는 6개월 이내)의 요양 및 재활치료비 포함
  - \* 의료비지원 금액한도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최대 3개월 이내, 간병비 지원 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각종 정부지원 제도 및 민간 지원 및 사보험 가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차액만 지원
- 생명의 유지와 관련이 없으나, 의료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급병실 이용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진단서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명시된 경우 상급병실은 5일 이내 지원 가능)
  - \* 다만, 감염 및 전염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수술 및 입원비 지원대상 제외 : 치과, 만성질환, 재활치료 등 (재활치료비는 입원 및 수술과 연계시 지원 가능)
  - \* 만성질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2조 참고
  - \* 단, 만성질환, 항암치료 환자 중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료법 제17조에 의한 진단서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 라. 기타사항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경기도의료원 외국인 근로자 등 진료사업 우선 활용 후 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는 자는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계 후 치료·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
-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비용이 150만원 이상 등 과다하게 청구되어 진료비 확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의료지원대상자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심사를 요청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소득·재산 기준 등이 상이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 선택 가능하도록 안내

### 3 주거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한 주거불능 상태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는 「재해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 나. 지원방법

- 시·군에서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 할 수 있는 주거(개인 가정 위탁, 무보증월세, 하숙, 여관 등)를 확보하여 제공
- 거소 확보 곤란 시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반드시 현장·증빙 등 확인
- 경매 및 화재, 월세 체납으로 강제퇴거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보증금 마련이 불가피한 대상자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
  - 지원금액 : 500만원 한도 (1회 이상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연계된 유사지원 사업 수혜대상자 지원 제외
  - ※ 보증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 지원
  - 대상자의 금융재산 보유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 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임대계약서, 임대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임대계약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 일체 제출

## 다. 지원기준

(단위 : 원/월)

지 역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시      지      역		398,900	662,500	874,100
군      지      역		299,100	435,600	574,200
보      증      금	가구별 5,000천원 한도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 라. 지원기간 : 3개월 지원 가능 (보증금은 1회만 지원)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9개월 지원 가능  
※ 3개월 지원 단위이나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하며, 위기상황 종료 시 즉시 지원 중지

## 마. 지 급 일 : 생계비 지급과 동일

### 바. 기타

- 공공임대주택(LH 등) 보증금 지원은 불가
- 보증금 지원 후 당월 임대료 지원은 불가 (익월부터 지원 검토 가능)
- 1년 이내 전출 또는 미거주 확인시 환수 조치 (단,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 될 경우 환수 제외 가능)

## 4 교육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포함된 가구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자
- 그 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나. 지원제외자

-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타 교육지원을 받는 자
  - 단, 방과 후 자유수강권, 급식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 대상자는 지원 가능

### 다. 지원방법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입금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한도 범위 내 영수증 금액)
- 수업료·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 라. 지원기준

-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단위 :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 ·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마.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 생계비 추가지원 가구에 한하여 1회 추가지원 가능
- 분기 구분
  -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 5 긴급통합지원

### 가. 지원대상자

-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선정 기준 이내의 가정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을 판단하여 지원 결정함
  - ※ 타사업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 미해소 가구 지원 가능

### 나. 지원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가구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연간(지원시작 시점부터 1년) 지원받은 기간의 합이 9개월 이상인 가구  
(예)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24.2.16.~10.15. 지원받은 경우 긴급통합지원은 업무담당자 등이 위기상황에 따른 지원 적정성 판단 이후 '25.2.16.부터 지원 가능
- 현행 다른 사업의 사례관리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다. 지원금액 및 범위

- 지원금액 :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 긴급통합지원이 종료 된 후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 지원범위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항목 지원 가능
  - 단, 단순 통원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 라. ‘긴급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 대상자 : 희망복지지원단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시군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의 통합사례관리 대상과 별도 운영
  - 간소화된 업무 절차로 신속지원
  - 공적지원 결정시 추가(연장)지원 여부 재검토
- 선정방법 : 긴급통합지원 위기도 조사표(서식 제16호) 활용
  - 위기도 조사는 문제의 원인과 관계없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결정에 활용

- 사례회의(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권역사례회의, 솔루션위원회 등)를 통해 긴급통합지원 대상자선정 및 지원수준 등 결정
- 지원방법 : 긴급사례 제공계획에 따라 지원
  - \* 초기상담 → 위기도 조사 → (읍면동)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지원대상 결정(4-5일 소요)
- 대상가구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물품(서비스) 구매 후 대상자에게 제공
  - (예) 낭·난방기기, 이불 등 물품 지원
- 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기타 비용 등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용	주요기관	지원기준
의료	재활치료비용, 진단비, 검사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등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	
주거	집수리 주거시설물 설치·교체·보수	사회복지시설 일자리사업단 등	연 1회 최대 4백만원 이내
사회복지 시설이용	생활시설 입소 재가서비스, 단기보호, 이동지원, 식사지원, 목욕지원 등 서비스 이용비용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포함)	※ 사례회의 거쳐 3회까지 연장가능 (지원한도 내)
기타	그 외 위기도에 따라 지원결정한 항목	서비스 제공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

- 생계지원은 물품지원 불가시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가능하나, 지원금액은 가구별 생계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회까지 결정
  - 물품지원불가 사유를 사례회의록에 명확히 기재 후 지급

## 6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가. 지원대상자

- 주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을 지원 받는 가구 중 시장·군수가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나. 지원종류

(1) 연료비 :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장기입원, 부분무료임차가구 제외)

- 지원방법 : 생계지원과 동일
- 지원기간 : 동절기(10~3월) 중 주지원을 받는 기간
- 지원기준 : 월 150,000원

※ 주지원 기간이 9월17일~10월16일인 경우 지원기간이 동절기에 속하므로 연료비 지급

(2) 구직활동비 : 실직·사업실패(휴·폐업) 가구원 및 취준생(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지원방법 : 생계지원과 동일
- 지원기간 : 주지원을 받는 기간
- 지원기준 : 월 100천원

(3) 해산비 : 가구원이 출산한 경우

- 지원방법 : 생계지원과 동일
- 지원횟수 : 1인당 1회(쌍둥이 출산시 2,000천원)
- 지원기준 : 1,000천원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지급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단,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 등 추후 확인 필요

(4) 장제비 :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방법 : 생계지원과 동일(장제를 실제 행한 자에게 지급 가능)
- 지원횟수 : 1인당 1회
- 지원기준 : 1,000천원

※ 주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만 지원

(5) 전기요금 : 주지원(생계주거) 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 지원대상 : 단전이 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대상 가구에 지원

○ 지원횟수 : 1회

○ 지원기준 :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한국전력공사 아름다운재단 등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하여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원

\* 상세내용은 긴급복지사업 안내 참고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지원방법, 지원기간 및 현장확인은 생계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지원 기간은 추가되는 항목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함

○ 지원기준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분야의 평균 비용으로 결정

○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먼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은 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이 급할 경우에는 먼저 지원한 후에 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제4장 사후조사 · 대상자관리

## 1 사후조사

### 가. 사후조사의 목적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확보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등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중 경기도형 긴급복지 소득재산 기준 충족한 자는 사전조사로 대체
- ※ 국가 긴급복지 지원사업 우선 검토

### 나. 사후조사 주체

- 시군구/읍면동 경기도형 긴급복지담당 공무원

### 다. 사후조사 시기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사
  - 실직 및 폐업,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유로 지원받는 20~40대 가구의 경우 취업상황 및 지출실태 등을 수시 조사하여 부정수급 방지 철저
  - 금융재산은 1개월 이내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지원의 적정성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조사 보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라. 사후조사 방법

-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 자료제출 요구는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즉시 제출 가능한 수준으로 하고,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현장확인서 등을 우선 활용
- 조사 시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 가구원 확인 :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행방불명 신고접수증 등
  - 소득, 취업·퇴직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휴·폐업 확인서 등
-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사본,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기타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기숙사 납입고지서, 월세 지출(임대차 확인서), 소득신고서<sup>2)</sup>,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경력증명서, 급여 통장사본,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출근부, 출소증명서 등
- 처분한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 지원대상자가 진술했던 소득·재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관련사항을 사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 적정성 심사에 제출
  - 고의적으로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개인정보의 보호(「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제19조)
  - 사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및 소득조사, 재산조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준용

## 2 적정성 심사

### 가. 적정성 심사의 목적

-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 심사

### 나. 적정성 심사 기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등
  - 시군의 실정에 맞는 심사위원회를 적정성 심사기구로 지정

2) 서식 제 6호

- 위원수가 10인을 초과할 경우 가급적 10인 이내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존 분과위원회 중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다. 적정성 심사 대상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지원한 모든 항목
  - 단,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 금융재산 등 기준은 차이가 있으므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적용
  - 위기상황의 발생이 명확하고 사후조사 결과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명백하게 충족한 경우 적정성 심사 생략 가능
- 위원회 심사 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금융에 관한 조사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 라. 적정성 심사 시기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마.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적정성 판단
  -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산술적 심의가 아님. 심의위원회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초과된다 하더라도 현장 확인을 통해 인지된 위기상황을 판단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여부 결정
  - 초기 판단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허위·거짓으로 인한 지원을 제외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 제외
- \* (예)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 지원조건으로 금품 수수, 신청자가 고의로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 또는 타인에게 지원한 경우 등
- \* (예) 신청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일: 1월 1일자

○ 재산기준 : 특례시 37,200만원, 시 31,000만원, 군 19,400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사업 주거용재산 공제 적용(특례시, 시 = 대도시 기준, 군 = 중소도시 기준)

\* 재산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의 기준재산액 + 기초생활보장법 기본재산공제액 적용

- 특례시지역(3개 특례시), 시지역(25개 시),군지역(3개 군)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부채

○ 금융재산\* 기준 : 1,200만원 + 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금융재산 : 3개월간의 평균 잔액, 긴급지원 우선 검토 절차 이행(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활용)하여 확인된 공적자료 활용

- 금융재산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재산 제외 항목(재산에 포함)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가, 지자체에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형성된 금융재산

(예)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청년통장 등

○ 위기상황 발생 및 현장확인을 통한 개별가구의 생계곤란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

### 3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연장 심사

가. 연장 심사의 목적

○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액수가 초과된 신청자의 연장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

나. 연장 심사 기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 시·군의 실정에 맞게 운영에 적합한 심사위원회를 선정

#### **다. 지원연장 결정기한**

- 1회 지원 후 초과된 의료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없이 지원연장 여부 결정 (지원 종료 3일전 까지 결정)

#### **라. 심사 완료 시기**

- 지원연장 결정일로부터 3일 이전에 완료
  - \* 불가피한 경우 사후 심사(지원연장 결정 후 1개월 이내)

### **4 지원종료 결정**

-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또는 긴급지원심의원회 등의 위원이 지원기간 중 위기상황 해소 여부 판단, 정기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
  - 생계·주거·교육지원 등 3개월간 1~3회 확인하여 위기상황 해소 여부 판단
  - 위기상황이 해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종료 시점 결정
    - 질병·부상의 회복, 취업여부, 주소득자의 복귀, 거주 주택마련, 출산 경과, 재혼 등 위기 해소 상태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의지와 다른 지원 제도로 전환필요 등을 판단하여 지원 종료 시점 결정
- 매월 급여지급 전 인적변동사항 확인
  - 사망, 타 시도 전출 등의 경우 지원종료 결정 및 필요 시 환수조치

### **5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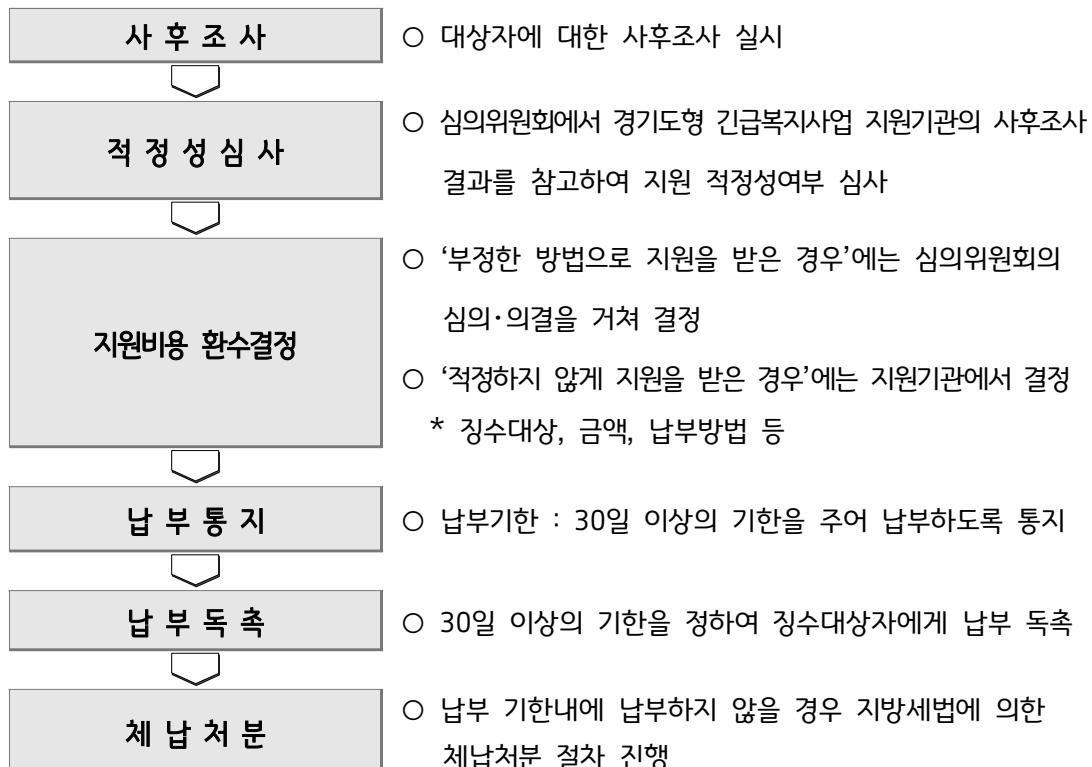
#### **가. 지원비용 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 취업 사실 및 소득, 본인 소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 부적정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과오 지원을 받은 경우
- 판정 및 환수 결정 : 시장·군수

- 환수 금액 : 반드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현장확인 시 소명 내용과는 다르지만 고의적인 거짓이 없는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수 여부 및 규모 결정

## 나.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비용환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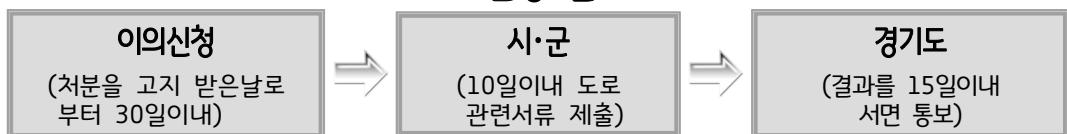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납부하도록 통지
  - \* 시장·군수의 반환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에 의한 이의신청제도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관은 지원비용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가능
- 지원비용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6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시장·군수의 지원 결정내용(연장결정 포함)
  - 시장·군수의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 이의신청인
  - 지원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 지원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자
- 이의신청 기한
  - 결정통보 및 비용반환 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효력의 소급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지원요청 결과 통보일, 연장결정 통보일 및 비용반환 결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시장·군수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 이의신청 절차
  -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서식 제10호)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 해당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 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체 없이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 복명서 작성

- 관계공무원은 현장조사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기관에 서면 통지

**【 이의신청 절차도 】**



## 7 기 타

- 위기상황의 판단, 적정성 심사 등 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의 전문가적 역량과 판단에 따라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문제하지 않음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도내 전·출입 시에는 전출 시·군에서 전입 시·군으로 서면 통보
- 도/시·군/읍면동 업무 분담(예)

도	시·군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li> <li>· 흥 보</li> <li>· 평 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안내, 신청·접수</li> <li>·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li> <li>· 지원대상 사후조사</li> <li>· 지원의 적정성 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안내, 신청·접수</li> <li>· 현장확인</li> <li>· 지원대상 사후조사</li> </ul>

\* 시·군·구 / 읍·면·동의 업무 분담은 시·군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 상담·안내 대장 작성
  - 시군구/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상담·안내 건수 작성 근거자료로 활용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 제출 : 매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서식 제11호)

## 제5장 서 식



[서식 제1호 - 신규 신청일 경우 긴급지원 우선 조사]

**긴급지원 우선검토 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연계**

(1/4)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서 및 현장확인서						처리기간		
						지체없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위기발생 사유	<input type="checkbox"/> 가.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input type="checkbox"/>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가정폭력·성폭력 <input type="checkbox"/> 마.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 상실 <input type="checkbox"/> 사. 가족돌봄으로 인한 생계곤란 <input type="checkbox"/> 자. 채무변제유예처분자 중 생계곤란 <input type="checkbox"/> 카. 지자체 조례에 따른( )						<input type="checkbox"/>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input type="checkbox"/> 라.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input type="checkbox"/> 바. 시설 퇴소아동 <input type="checkbox"/> 아. 과다채무, 빚 독촉으로 인한 생계곤란 <input type="checkbox"/> 차. 범죄피해자 중 생계곤란 <input type="checkbox"/> 타.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	
	긴급지원 대상자	대상자 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재 산 사 항	건축물/주택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 월)	<input type="checkbox"/> 주택	( 월)			
	토 지	<input type="checkbox"/> 논	( 월)	<input type="checkbox"/> 밭	( 월)			
		<input type="checkbox"/> 임야	( 월)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월)			
	선 박	<input type="checkbox"/> 선박	대 ( )		원)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평가액	( 원)	<input type="checkbox"/> 차종·연식	( )			
		<input type="checkbox"/> 차량번호	( )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 )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 cc)	<input type="checkbox"/> 용도	( )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	( 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원)		
	금융재산	<input type="checkbox"/> 은행예금·적금	( 원)	<input type="checkbox"/> 저축성·보장성보험	( 원)			
<input type="checkbox"/> 주식		( 원)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여음등	( 원)				
<input type="checkbox"/>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원)								
동산	<input type="checkbox"/> 소	( 원)	<input type="checkbox"/> 돼지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	( 원)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임목	( 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부채	<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 원)	<input type="checkbox"/> 일반부채	( 원)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3. <u>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u></p> <p>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u>본 확인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설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u></p> <p>나.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u>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u></p> <p>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u>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u></p> <p>4.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신청서 및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현장확인 내용	

현장확인 내용	<input type="checkbox"/> 지원필요	<input type="checkbox"/> 생계지원	<input type="checkbox"/>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지원	<input type="checkbox"/> 긴급통합지원
		<input type="checkbox"/> 그밖의지원(	<input type="checkbox"/> 연료비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input type="checkbox"/> 장제비	<input type="checkbox"/> 해산비
	<input type="checkbox"/> 타지원연계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input type="checkbox"/> 보건소(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input type="checkbox"/> 지자체자체 지원사업	
지원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위와 같이 긴급지원요청 및 신고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 현장확인자 :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연계하여 의료지원 결정된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를 반드시 안내

	<p><b>《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 안내 》</b></p>
	<p>1.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지원을 받은 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나목)의료지원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진료비)이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급여비용 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가능</li> </ul>
	<p>2.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li> <li>○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li> </ul>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안내	<p>3. 요청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긴급의료지원대상자 등)</li> </ul>
사항	<p>4. 요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평가원 홈페이지(<a href="http://www.hira.or.kr">www.hira.or.kr</a>) / 진료비확인 / 비급여 긴급의료지원진료비 확인요청</li> </ul> </li> <li>○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 또는 방문, FAX</li> </ul> </li> </ul> <p>5. 심사평가원 통보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등기) 발송</li> </ul>

위와 같이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음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사항을 고지한 긴급의료지원담당 :

(서명 또는 인)

긴급의료비지원 대상자 : (본인 외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제3호]

<input type="checkbox"/> 해산비 <input type="checkbox"/> 장제비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무한 돌봄 대상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 : )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해산 (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input type="checkbox"/> 출산	<input type="checkbox"/> 사산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전기요금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지서 발급기관명		신청금액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로서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b>시장·군수 귀하</b>						
구비 서류	1. 해산비 신청자 - 출생증명서 1부 (사산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장제비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전기요금 신청자 - 전기요금 체납고지서 1부 4. 기타 관련 증빙					

[서식 제4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Redacted]	[Redacted] - [Redacted]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2)</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sup>3)</sup>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Redacted]	[Redacted]	[Redacted]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Redacted]년 [Redacted]월 [Redacted]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규약**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제활용품)]

금융기관 등의 명칭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p> <p>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 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p> <p>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p>
금융정보 등의 범위
<p>1. 금융정보</p> <p>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p> <p>2. 신용정보</p> <p>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p> <p>3. 보험정보</p> <p>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p>
유의 사항
<p>○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p> <p>○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 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간접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인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 「아동수당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제5호]

고용·임금 확인서						
피고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용 성격 (피고용가 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임금지급형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기본급		월분	월분	월분
		각종수당				
		기타금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금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p>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span style="float: right;">전화번호 :</span> (영업허가번호) 사업주명 :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날인)</span></p>						
<p>*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준용</p> <p>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p>						

##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소득신고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취업상태	유형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input type="checkbox"/>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		
월소득	일당제	1일임금 월평균 근로일수 :	원 일	
	월급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영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타	월 평균 총소득 : (이전 소득일 경우 지원하는 곳 : )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span style="margin-right: 20px;">년</span> <span style="margin-right: 20px;">월</span> <span>일</span> 신고자 :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b>시장·군수귀하</b>				
<p style="text-align: left;"><b>*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준용</b></p> <p>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p>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선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명( )	<input type="checkbox"/>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 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동산	<input type="checkbox"/> 소 ( 마리, 원)	분양권		원
			<input type="checkbox"/> 돼지( 마리, 원)	조합원 입주권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 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 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회원권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input type="checkbox"/>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위기발생 사유	<input type="checkbox"/> 주소득자의 <u>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u> <input type="checkbox"/> 가구구성원으로부터 <u>방암·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u> <input type="checkbox"/> 실직 또는 사업실패(휴·폐업)로 <u>소득 상실</u> <input type="checkbox"/> <u>가족돌봄으로 인한 생계곤란</u> <input type="checkbox"/> <u>채무변제유예처분자 중 생계곤란</u> <input type="checkbox"/> <u>지자체 조례에 따른 ( )</u>				<input type="checkbox"/> <u>중한 질병 또는 부상</u> <input type="checkbox"/> <u>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u> <input type="checkbox"/> <u>시설 퇴소아동</u> <input type="checkbox"/> <u>과다채무, 빚 독촉으로 인한 생계곤란</u> <input type="checkbox"/> <u>범죄피해자 중 생계곤란</u> <input type="checkbox"/> <u>보건복지부 고시사항 ( )</u>		
		지원종류			지원내용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가구주 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재 산  사 항	건축물/주택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원) <input type="checkbox"/> 주택( 원)						
	토지	<input type="checkbox"/> 논( 원) <input type="checkbox"/> 밭( 원) <input type="checkbox"/> 임야(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선박	<input type="checkbox"/> 선박 대 ( 원)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평가액( 원) <input type="checkbox"/> 차종·연식( ) <input type="checkbox"/> 차량번호( )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input type="checkbox"/>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 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재산	<input type="checkbox"/> 은행예금·적금( 원) <input type="checkbox"/> 저축성보험( 원) <input type="checkbox"/> 주식( 원)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산	<input type="checkbox"/> 소( 원) <input type="checkbox"/> 돼지(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임목( 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부채	<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원) <input type="checkbox"/> 일반부채( 원)						

(뒷 면)

[서식 제8호]

<input type="checkbox"/> 지원요청결과 <input type="checkbox"/> 지원변경결정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 통보서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input type="checkbox"/> 경기도형 긴급복지 요청자				
지원 결정 내용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지원적합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결정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청에 신고하셔야 하며, 지원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후조사결과 소득, 재산의 합계액, 금융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등에 지원이 중지(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 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li> <li>• 생계지원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급여로 전환됩니다.</li> </ul>		
	지 원 안내	의료지원 결정통보서 발급 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까지(입원일 기준)입니다.		
		의료지원 결정 대상자가 동 통보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진료비용을 청구하여야 비용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 원 부적합	부적합사유		
		지원부적합 안 내	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현 경기도형 긴급복지 돌봄대상자			
	□ 지원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 지원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input type="checkbox"/>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의 지원 요청, 연장 및 중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문의 전화번호 :				
시장·군수 (인)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경기도와 00시(군)이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식 제9호]

##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 제 목 경기도형 긴급복지 반환비용 납부통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지침에 의거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다음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원비용 납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한돌봄 대상자 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 시장·군수(인)

담당자 ○○○ 과장 ○○○

협조자 ○○○

시행 ○○○과-○○

우 ○○○-○○○ 주소

전화 전송

/ 홈페이지

/ e-mail 주소

/ 공개·비공개여부

[서식 제10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4.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 )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input type="checkbox"/> 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알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p>「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인동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안내	<p>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p> <p>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돌봄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p> <p>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p> <p>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p> <p>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p>						
	구비서류	<p>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p> <p>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제11호]

## 2024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지원실적

시 군 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구분	문 의 가 구	신 청 가 구	결정 (적합) 최초 가구	지월 총계 (월별) (A+B+C+D+E+F)				생계비(A)				의료비(B)			
								최 초 가 구	가 구 원 수	전 체 건 수	전체 금액 (원)	최 초 가 구	가 구 원 수	전 체 건 수	전체 금액 (원)	최 초 가 구	가 구 원 수	전 체 건 수	전체 금액 (원)
0 0 시 군					전월 누계														
					당월 실적														
					누계														

주거비( C )				교육비(D)				긴급통합지원( E )				시장군수 추가지원(F)			
최 초 가 구 원 수	가 구 전 체 건 수	전 체 금 액 (원)													

연료비(10~3월)				구직활동비				
최 초 가 구 원 수	가 구 전 체 건 수	전 체 금 액 (원)	최 초 가 구 원 수	가 구 전 체 건 수	전 체 금 액 (원)	최 초 가 구 원 수	가 구 전 체 건 수	전 체 금 액 (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최 초 가 구 원 수	가 구 전 체 건 수	전 체 금 액 (원)	최 초 가 구 원 수	가 구 전 체 건 수	전 체 금 액 (원)	최 초 가 구 원 수	가 구 전 체 건 수	전 체 금 액 (원)			

[서식 제12호] 지원대장

##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접수 및 지원 대장

번호	연번	시군	거주지 읍면동	성명	생년 월일	성별	기구 원수	후 포 연 락 처	으 해	계좌번호	접수일 자	현장 확인일 자	신청사유	접수일 자	접수여부
	1														
	2														
	3														
	4														
	5														
	6														
	7														
	8														
	9														
	10														

[서식 제13호]

## 경기도형 긴급복지 상담·안내 대장

번호	상담일자	성명	거주 읍·면·동	연락처	상담내용	신청연계 여부(0,X)	비고

※ 「비고」란에 상담자 성명 기재

## 근로곤란자(양육·간병·보호) 사실조사확인서

※ 확인결과 어느 하나 이상의 "N"인 경우 근로가능으로 판단

<b>○ 조사대상</b>			
세대주	근로곤란자	양육/간병/보호대상자	
<b>○ 조사내용</b>			
구분	확인 사항	Y	N
미취학자녀 양육	1.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다 2.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4.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1. 간병·보호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된다. ①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하다. ② 스스로 용변이 불가능하다. ③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④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인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 ⑤ 질병·부상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2.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월평균 20일,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요양보험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고 있다. ※ 서비스제공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자와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중증장애인)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Y"로 체크		
<p>※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 및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은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있는 가구원을 의미함</p> <p>(조사대상자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가 (<input type="checkbox"/>곤란 <input type="checkbox"/>가능)함을 확인합니다.</p>			

20 .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15호]

## 간병인 활동일지 및 내역서

간병 보호 대상자명	간병 보호 대상자 생년월일	간병 보호 대상자 확인
	년 월 일	(인)

## ○ 활동내용

지 급 계 좌	간병인 성명	간병비 청구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사유)
		원			

상기 간병활동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간병인 보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합니다.

간병인 : (인)

## 시장 군수 귀하

추가 제출 서류 - 간병인 경력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4. 3.>

##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부터	까지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 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 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 외	(7)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8)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진찰료				(9) 이미 납부한 금액		
기본 항목	1인실			(10) 납부할 금액 (⑧-⑨)		
	2·3인실			카드		
	4인실 이상			현금영수증		
	식대				현금	
	투약 및 조 제료	행위료			합계	
		약품비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주사료	행위료			현금영수증( )	
		약품비			신분확인번호	
	마취료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처치 및 수술료				* 요양기관 임의 활용공간	
검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 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보철 · 교정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 수가(요양병원)						
정액 수가(완화의료)						
질병 군 포괄수가						
합계		(1)	(2)	(3)	(4)	(5)
상한액 초과금		(6)	-		선택진료 신청	[ ] 유 [ ] 무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 · 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인]		
년 월 일						일반사항 안내
항목별 설명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월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 · MRI · 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행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원급기관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호에 따라 상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선택 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4. 「질병 군 포괄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 군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여러 의료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군의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로 비급여대상이나 이송처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판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						1. 이 계산서 ·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 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 · 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출증명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자출증명)」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 <sup>2</sup> ]

## 긴급통합지원 위기도 조사표

구 분	위기도 문항	없음	약간 어려움 (1)	매우 어려움 (2)
기초 생활해결	1. 돈이 없어 식사를 못하고 있거나 식료품 구입이 어렵다.			
	2. 계절에 맞는 의복과 신발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3. 치료비가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을 못 가고 있다.			
	4. 집세가 3개월 이상 밀려있다.			
	5.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 (퇴거위험, 노숙,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짐질방, 쉼터 등).			
	6. 난방장치가 없거나, 난방비 때문에 추운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7. 공과금(사회보험료, 전화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중 하나 이상)이 밀려있다.			
자산관리	1. 빚과 관련 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족 돌봄	1.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신적 건강유지	1.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등으로 우울감이나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p>* 긴급통합지원 및 복지서비스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여 긴급 재가서비스 실시 - 긴급통합지원 위기도 조사 후 내부 사례회의를 통하여 긴급통합지원 여부, 긴급복지 지원 신청 등 판단</p> <p>* 긴급통합지원, 긴급복지 지원 여부 결정시 자체 검토하여 서비스 지속여부 결정(시·군)</p>				
긴급복지 신청대상 여 부	<input type="checkbox"/> 긴급복지 신청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급여 중복, 기준초과 등)			

\* 긴급통합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읍면동 초기상담 시 위기도 측정으로 활용

\* 조사표 활용(읍면동) : 대상자 초기 상담→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지원 등

<b>현장조사서</b>	
조사 대상	(성명) (주소) (연락처)
조사 목적	긴급복지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조사 기간	20 . . . 부터 20 . . .
조사 담당자	소속 : OO(시·군) OO과      직급 : OO급      성명 : OOO
조사의 범위	<input type="radio"/> 위기상황 발생 사유 <input type="radio"/> 소득·재산 사항 등 지원기준 판단 자료 <input type="radio"/> 그 외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 일체
관계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
제출자료	<input type="radio"/> 「긴급복지지원법」제8조2에 따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input type="radio"/> 기타 위기상황 확인 및 지원결정에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
기타	
년        월        일	
<b>기관명</b>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서식 제18호]

경기도형 긴급지원의뢰서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input type="checkbox"/>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자살고위험군				
신청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연락처						
	주소								
긴급지원 대상자	대상자 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연락처	비고	
재산 사항	건축물/주택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 ) 원	<input type="checkbox"/> 주택 ( ) 원						
	토지	<input type="checkbox"/> 논 ( ) 원	<input type="checkbox"/> 밭 ( ) 원						
		<input type="checkbox"/> 임야 (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원						
	선박	<input type="checkbox"/> 선박 대 ( ) 원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평가액 ( ) 원	<input type="checkbox"/> 차종·연식 ( )						
		<input type="checkbox"/> 차량번호 ( )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 )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 ) cc	<input type="checkbox"/> 용도 ( )						
	임차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 ( ) 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원						
	금융재산	<input type="checkbox"/> 은행예금·적금 ( ) 원	<input type="checkbox"/> 저축성·보장성보험 ( ) 원						
		<input type="checkbox"/> 주식 ( ) 원	<input type="checkbox"/> 현금·수표·어음등 ( ) 원						
		<input type="checkbox"/>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원							
	동산	<input type="checkbox"/> 소 ( ) 원	<input type="checkbox"/> 돼지 (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 ( ) 원	<input type="checkbox"/> 회원권 ( )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임목 ( ) 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 ( )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원								
부채	<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 ) 원	<input type="checkbox"/> 일반부채 ( ) 원							



[서식 제19호]

경기도형 긴급복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대상자가 법적 조치로 인하여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민법상 후견인 명의 계좌로 입금)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대상자가 통장이 없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원종류		지원금액	
대리수령 대상자	대상자		생년월일	
	긴급복지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및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급여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긴급복지 대상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제6장 참고사항



## 1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담당자 현황

기관명	실과명	전화번호	비 고
경기도	복지사업과	8008-5674	
수원시	돌봄정책과	228-2439	
용인시	복지정책과	324-2204	
고양시	복지정책과	8075-3493	
성남시	복지정책과	729-2894	
화성시	복지정책과	5189-2174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858	
남양주시	복지정책과	590-8925	
안산시	복지정책과	481-2608	
평택시	복지정책과	8024-3072	
안양시	복지정책과	8045-5456	
시흥시	복지정책과	310-3592	
김포시	복지과	980-5648	
파주시	복지정책과	940-4552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828-4143	
광주시	복지정책과	760-5956	
광명시	복지정책과	02-2680-6514	
하남시	복지정책과	790-5716	
군포시	복지정책과	390-0647	
오산시	희망복지과	8036-7422	
양주시	사회복지과	8082-5754	
이천시	복지정책과	645-3530	
구리시	복지정책과	550-2216	
안성시	복지정책과	678-2173	
의왕시	복지정책과	345-2423	
포천시	복지정책과	538-3081	
양평군	복지정책과	770-2116	
여주시	복지행정과	887-2279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860-2362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45	
가평군	복지정책과	580-2086	
연천군	복지정책과	839-2462	

## 2 경기도의료원 현황

병원명	소재지	진료시간	대표전화	응급센터
수원병원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평일 08:30-17:30 응급실 연중무휴	8880-114	8880-119 8880-129
의정부병원	의정부시 흥선로 142		8285-000	8285-119 8285-129
파주병원	파주시 중앙로 207		940-9100	9409-119 9409-129
이천병원	이천시 경충대로 2742		639-4800	639-4888 639-4999
안성병원	안성시 남파로 95		8046-5000	8046-5119 8046-5129
포천병원	포천시 포천로 1648		539-9114	539-9132 539-9133

### 3 복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

구분	사업명	문의처
생계 유지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	긴급복지 지원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경기도 콜센터(☎ 120)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세보증금 지원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비정규직 전세자금대출 주인정 월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1566-9009)
	전세피해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070-4820-6903~4)
재정적 도움이 필요할 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채무상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콜센터(☎ 1600-5500)
	서민금융대출상담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1397)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 1588-3570)
실직으로 곤란을 겪을 때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일자리 상담	•관할 읍면동 취업 상담창구 / 관할 시군 일자리센터
임신·출산 시의 경제적 도움	출산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사업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 보육 관련 도움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린 자녀 건강관리 도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290)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전화(☎ 1388)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의료급여 제도, 건강보험 차상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아동수당, 장애인영금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무료 법률 상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67-1389) •노인학대신고상담(☎ 1577-1389)
	경기도 내 60세 이상 노인 및 가족 전문상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1833-2255)) •시군 노인복지관
한부모·조손가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미혼모·부 초기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지원	•여성가족부 민원안내(☎ 02-2100-6000)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사업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신건강 관련 상담(24시간, 수신만)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1577-0199)
	자살예방 관련 상담(24시간, 수신만)	•자살예방센터 상담전화(☎ 1393)
다문화탈북민가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다누리콜센터(☎ 1577-1366)

<b>작성기관</b>	<b>경기도청 복지사업과</b>
<b>전      화</b>	<b>031) 8008-5674</b>
<b>팩      스</b>	<b>031) 8008-4259</b>